◉기상청공고 제2024-76호

「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10일

기상청장

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

1. 제정이유

기상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,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).

다.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, 평가, 이의신청,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.

라.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, 지정 취소·연장,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)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(관보게재일+20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계측표준협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 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
- 전자우편: emc2@korea.kr
- 팩스: 042-489-6026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(전화: 042-481-9348)에 문의하여 주시기

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http://www.kma.go.kr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